

2026년 제1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제물포구의회)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6월 24일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근무부서)	임용 직급	임용 인원	임용 기간	담당 직무
정책지원관 (제물포구의회 사무국)	지방행정 주사보 (일반임기 제)	4명	임용일 ~ 1년 (주40시간)	- 조례 제정·개정·폐지,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 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검토 지원 -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원 - 의원 서류제출 요구서, 구정질문, 의정 자유발언 등 작성과 관련된 자료의 조사·취합 - 의원의 공청회·토론회 등 준비, 홍보 및 개최 지원 -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 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과 그에 수반되는 활동에 대한 실무 지원 등

※ 2026년 7월 1일 제물포구 출범 후 제물포구의회 소속 근무

※ 임용기간은 근무실적 및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종류)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준비행위) 및 제7조(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

3. 응시자격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가. 공통요건

- 응시연령 : 18세 이상
- 지역·성별 : 제한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외국인이 아닌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 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④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처분 결과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나. 응시조건

○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임용예정분야 및 직급	자 격 요 건
정 책 지 원 관 (지방행정주사보)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범위】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지방의회,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 대학·대학원, 연구소, 민간기관 등에서 행정, 법무, 예산, 결산, 감사, 연구, 조사, 분석, 입법지원 등의 업무 실무경력자 * 공공기관 : 2026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에 따른 공공기관 고시(재정경제부) * 출자·출연기관 :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지정 고시(행정안전부)

- ※ 관련 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 ※ 학위취득 과정은 관련 경력의 실무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 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에는 불인정 될 수 있음
- ※ 전일근무(주 40시간, 1일 8시간 기준)의 경우에는 경력의 전부를 인정하고, 전일근무가 아닌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

4. 근무조건 및 보수수준

○ 근무기간 : 최초 임용일로부터 1년

○ 근무시간 : 주 40시간

○ 보수(연봉)수준 : 50,272천원

▶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별표13])

구 분	연 봉 액 (단위 : 천원)	
	상 한 액	하 한 액
일반임기제 7급(상당)	70,782	50,272

※ 임기제 공무원 신규임용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임용 등급별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적용

※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희망 시 가입가능(단,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복무관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에 따름

5. 시험일정 및 선발방법

□ 시험일정

원서접수 기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시행		최종합격자 발표
		일 자	장 소	
2026. 7. 6.(월) ~ 2026. 7. 8.(수)	2026. 7. 10.(금) 예 정	2026. 7월 중	위원회실	2026. 7월 중

※ 시험일정 및 합격자는 개별 통지하지 않음. 서류·면접시험·최종합격자 발표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확인

※ 인천광역시 동구(제물포구)의회 홈페이지 > 의회소식 > 고시공고

□ 선발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자격·경력 및 구비서류 등 형식요건 심사)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임용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임용예정 분야와 관련성, 경력기간,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업무 실적을 나타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응시자가 많을 경우 적정 면접인원을 고려하여 서류전형 합격자 배수를 결정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직무수행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함
- 평정항목 (5개 항목)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다.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응시자의 면접시험 평정표에서 중(보통), 하(미흡)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우수)”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보통)”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불합격 기준

※ 아래 3가지 중 1가지 이상 해당 시 불합격

-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
-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
- 면접 포기자 및 면접 불참자

라. 최종합격자 발표

○ 최종합격자 개별통보 및 동구(제물포구)의회 홈페이지 공고

- ※ 최종 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 최종합격자는 임용 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임용 자격이 부여됨

6. 원서접수

□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 또는 방문 제출(대리 접수가능)

- 응시원서 : 공고문에 첨부한 소정 양식 활용
- 접수기간 : 2026. 7. 6.(월) ~ 7. 8.(수) / 평일기준 3일간

《 방문접수 》

- 접수처 : 제물포구의회 사무국 의정팀
- 접수시간 : 09:00 ~ 18:00 (중식시간 12:00~13:00 제외)
 - ※ 토·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 제물포구청 민원지적과에서 응시수수료(수입증지) 납부 후 응시원서에 수입증지 첨부하여 접수처에 접수
 - ※ 제물포구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처리
- 응시수수료 : 7,000원
- 대리 접수자는 접수기간 내에 전화로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방문접수 시 구비서류기재사항 등 미비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 등기우편접수 》

- 우편주소 : (22556)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금곡로 67, 제물포구의회 사무국 의정팀
- 유효일 : 원서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근무시간(18:00) 내 도착
해야 함 ※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활용한 접수는 불가
- 응시 수수료 : 우체국 '통상환증서(7,000원)'를 구입하여 제출서류와 동봉하여 제출
- 기타사항
 - 등기우편은 제물포구의회 사무국 의정팀 (☎ 032-770-2650)으로 전화 후 송부
 - 등기우편 접수 시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발표 전까지 휴대폰 메시지로 통보 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 등기우편 접수 시 구비서류·기재사항 등 미비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7. 제출서류

〈스테플러 사용 금지〉

제출서류	내 용	비 고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	▶ 목록별로 제출 여부 표시	[서식 1]
② 응시원서 1부	▶ 응시수수료 - 7급 : 7,000원 ▶ 수납처 : 제물포구청 민원지적과 ▶ 정부 및 타 지자체 수입증지 적용 불가 ▶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인 사람 ※ 해당증명서 제출 필요	[서식 2]

제출서류	내 용	비 고
③ 이력서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반드시 증빙자료 첨부(미첨부 시 불인정)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되므로 경력증명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력은 이력서 기재금지	[서식 3]
④ 자기소개서 1부	▶ A4 2매 이내	[서식 4]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	▶ A4 2매 이내 ▶ 임용예정 직위의 주요업무에 관한 추진 방향, 추진전략, 추진일정 등을 자유롭게 기술	[서식 5]
⑥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서식 6]
⑦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서식 7]
⑧ 행정정보공공이용 사전동의서 1부	▶ ⑨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한 경우 제출 불요	[서식 8]

제출서류	내 용	비 고
⑨ 주민등록초본 1부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포함 ▶ ⑧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할 필요 없음	
⑩ 최종 학력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박사 또는 석사학위 보유자인 경우 학위 증명서 함께 제출 ▶ 고졸은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⑪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1부	▶ 해당자에 한함	[서식 9]
⑫ 경력(재직) 증명서 1부	▶ 발행기관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발급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직무 관련 업무수행 실적이 있는 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재직기간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경력 인정(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 등 입증 자료 제출(미제출 시 불인정)	

제출서류	내 용	비 고
⑬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 국민건강보험(www.nhis.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공단 방문 발급 ▶ 경력증명서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발급 ▶ 미 해당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제출 가능	
⑭ 관련 분야 자격증 사본 1부	▶ 자격·면허요건이나 우대요건 등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자격(면허)증 유효기간 : 면접시험일 기준	
※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분 또는 유효기간 내 서류에 한함 ※ 제출서류 중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함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공증받은 한글 번역본 첨부 ※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 시험 무효 및 합격이 취소처리되며, 임용 후에도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임용이 취소됨		

8. 재공고 및 변경공고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하며, 1차 공고 응시자는 기 제출한 응시원서로 같음
- 공고한 내용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

9. 기타(유의) 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경력증명 사본을 첨부한 응시자는 최종합격 후 임용 전 원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불합격 처리됩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 (예 :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리며 시험 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응시원서에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작성 시 출생지, 학교명, 부모 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 본 공고 내용은 재공고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해당자에게 개별통지 또는 동구(제물포구)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구의회 사무과 의정팀(☎ 032-770-6742)
- ※ 7. 1. 이후에는 제물포구의회 사무국 의정팀(☎ 032-770-26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